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 고
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	**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**	명칭변경
제4조(거래장소)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(이하 "개설점" 이라 함)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.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,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·현금자동입출금기·컴퓨터·전화기 등(이하 "전신 통신기기" 라 함)을 통하여도 신탁금의 입금이나 지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	**제4조(거래장소)**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(이하 "개설점" 이라 함)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. 다만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다른 영업점,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·현금자동입출금기·컴퓨터·전화기 등(이하 "전신,통신기기" 라 함)을 통하여도 신탁금의 입금이나 지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	문구 정비
제10조(신탁금의 운용) ①,② (생 략) ③신탁재산 중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은 은행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써 이를 은행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.	**제10조(신탁금의 운용)** ①,② (생 략) ③신탁재산 중 한국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은 은행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가로써 이를 은행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.	명칭수정
제11조(신탁재산의 표시) 신탁재산에 대하여는	**제11조(신탁재산의 표시)** 신탁재산에 대하여	문구정비

현 행	개정안	비 고
신탁의 등기·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	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	
제13조(신탁보수)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 중에서 취득합니다.	**제13조(신탁보수)** 신탁보수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신탁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 중에서 취득합니다.	문구정비
제14조(조세 및 비용)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.	**제14조(조세 및 비용)**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.	문구정비
제15조(수수료) ①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	**제15조(수수료)** ①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	
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	②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	문구정비
<신 설>		

현 행	개정안	비 고
제16조(신탁금의 지급) ①,② (생 략) ③ 신탁이 종료하여 수익자가 신탁금과 신탁이익을 이의 없이 수령한 때는 그 최종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. <신 설> <신 설> ,신 설> **제17조(중도해지)** ①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·수익자 연서로써	있습니다.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. **제16조(신탁금의 지급)** ①,② (좌 동)_ ③신탁이 종료된 경우 은행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습니다.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,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⑤ 은행은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“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 ⑥ 수익자가 은행으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	문구 추가

현 행	개정안	비 고
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신탁재산 중에서 소정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 ② (생 략)	**제17조(중도해지)** ①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·수익자 연서로써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신탁재산 중에서 금전신탁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소정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 ② (좌 동)	
제19조(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) ①거래처는 증서·거래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훼손했을 때는 곧 지체 없이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, 이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.	**제19조(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)** ①거래처는 증서·거래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훼손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.	문구정비 단서조항 삭제
②거래처가 인감(또는 서명)·비밀번호·성명·상호·대표자·대리인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	②거래처가 인감(또는 서명)·비밀번호·성명·상호·대표자·대리인·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때는 지체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	
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	<삭 제>	
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.	<삭 제>	

현 행	개정안	비 고
제24조(통지방법) ①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②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<신 설>	**제24조(통지방법)** ①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③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없이 거래처가 제19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	
제25조 (신탁금의 시효) ①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		조항변경

현 행	개정안	비 고
것으로 하며, 해당계좌는은행의 잡수입으로 처리됩니다 ② 거래처가 잡수입처리된 계좌의 지급을 원할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별도의 이율을 적용하여 기간별 이익을 계산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	<삭 제> ,삭 제>	
제26조(면책)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,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(또는 서명)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·위조·변조,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밖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**제25조(면책)**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,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(또는 서명)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·위조·변조,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조항변경
②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,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	②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	

현 행	개정안	비 고
지지 아니합니다.	로 말미암아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,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	
③은행은 제19조 제1항,제3항의 신고 및 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.	③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19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
<신 설>	④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(카드,비밀번호등)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	

현 행	개정안	비 고
<신 설> **제27조(약관변경 등)**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신탁상품별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, 이 기간안에 거래처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	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 **제26조(약관변경 등)** ①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	조항변경

현 행	개정안	비 고
<신 설>	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.	
<신 설>	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다만,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	
<신 설>	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	
<신 설>	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	
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신탁상품별 약관 및	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	제27조 1항으로 이동

현 행	개정안	비 고
별도 약정에 정한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신탁상품별 약관 및 별도약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 ③ 이 약관이나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이 약관이나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신탁업감독규정 및 은행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,신 설>	니다. (조 변 경) <삭 제> (조 변 경) **제27조(약관의 적용)** ①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신탁상품별 약관 및 별도 약정에 정한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신탁상품별 약관 및 별도약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이나 신탁상품별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.	재27조2항으로 이동 조 신설 문구일부 삭제 및 정비
제28조 (거래중지계좌 편입) 은행은 금전신탁 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신탁 내에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, 별도 관리시 은행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신탁이익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	**제28조 (거래중지계좌 편입)** 은행은 금전신탁 거래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신탁 내에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 별도 관리할 수 있다.	